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시

기초연금액 공제 촉구 결의안

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,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노원구 제6선거구 유청 의원입니다.
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시 기초연금액 공제 촉구 결의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-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09-01749호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시 기초연금액 공제 촉구 결의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- 기초연금제도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 취지가 저소득층 노인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나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이 수령하는 수급액에서 기초연금액을 실제소득으로 산정함에 따라 기초연금 혜택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.

□ 무엇보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이 기초연금 수령에 따라 소득인정액의 증가로 인하여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상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이 박탈되는 등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도 있는 바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상의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산정시 기초연금액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.

□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 아무쪼록,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